

下水道法 施行規則

제정 1971. 6. 15 건설부령 제107호
개정 1983. 7. 28 건설부령 제361호
개정 1995. 2. 7 환경부령 제 5 호

- 第 1 條 目 的
- 第 2 條 認可申請書類
- 第 3 條 管理의 範圍
- 第 4 條 非管理廳에 의한 工事施行許可申請書
- 第 5 條 公共下水道의 構造基準
- 第 6 條 放流水의 水質檢査
- 第 7 條 公共下水道臺帳
- 第 8 條 施設 또는 工作物의 設置許可
- 第 9 條 使用制限
- 第10條 證 票
- 第11條 排水設備의 設置申告등
- 第12條 排水設備의 設置 및 構造基準등
- 第12條의2 權限委任事項의 處理報告
- 第13條 裁決申請書
- 第14條 意見陳述의 節次
- 第15條 過怠料의 徵收節次

附 則

下水道法施行規則

개정 1995. 2. 7 환경부령 제 5 호

第 1 條(目的) 이 규칙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3. 7.28)

第 2 條(認可申請書類)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평면도·중단

면도·구조표준도화 배수구·맨홀·물받이 및 역 사이펀의 구조도

2.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시설를 포함한다)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3. 제1호 내지 제2호외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전문개정 95. 2. 7)

第 3 條(管理의 範圍) ①법 제7조제1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의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다.
2.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 기타 공작물의 관리의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95. 2. 7)

第4條(非管理廳에 의한 工事施行許可申請書) 영 제8조의3제1항(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83. 7.28)

第5條(公共下水道の 構造基準)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는 다른 공장하수도의 하수관거·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 1의2. 공공하수도는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하여 하수의 정체와 침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신설 95. 2. 7)
2. 공공하수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거의 방향·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의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하수관거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거가 직선형태인 경우 그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마다, 300밀리미터 초과 6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7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600밀리미터초과 1천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밀리미터초과 1천5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2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라.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거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물받이는 그 간격이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가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받이의 경우 밑바닥에는 1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진흙종류를 침전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오수받이의 밑바닥에는 적당한 크기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물받이에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조항신설 95. 2. 7)

8.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 7. 28)

9.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하수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조항신설 95. 2. 7)

第5條의 2 (95. 2. 7 삭제)

第6條(放流水의 水質檢査)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第7條(公共下水道臺帳)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개정 83. 7. 28)

②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83. 7. 28)

③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83. 7. 28)

④도면은 일반도 및 평면도로서 구분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83. 7. 28)

1. 일반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이어야 한다.

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거 및 토구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조항 개정 95. 2. 7)

라.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또는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00분의 1내지 600분의 1의 평면도이어야 한다.

가. 제1호 각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 및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 및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선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 및 평 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부지안의 주요한 시설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 기타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등의 위치
⑤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83. 7.28)

⑥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95. 2. 7)

第8條(施設 또는 工作物의 設置許可)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 물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3. 7. 28)

第9條(使用制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0條(證標)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 7. 28)

第11條(排水設備의 設置申告등)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는 별

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5. 2. 7)
第12條(排水設備의 設置 및 構造基準등)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 2. 7)

3.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 2. 7)

4.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콘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5. 2. 7)

5. 분류식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95. 2. 7)

6.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95. 2. 7)

①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외에 별표의 세부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 2. 7)

第12條의2(權限委任事項의 處理報告)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매연도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 2. 7)

1. 공공하수도설치인가상황(별지 제13호 서식)
2. 공사의 중지등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 상황(별지 제14호서식)[본조신설 '83. 7. 28]

第13條(裁決申請書)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3. 7. 28)

第14條(意見陳述의 節次)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 2. 7)

第15條(過怠料의 徵收節次)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 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본조신설 95. 2. 7)

附 則(95. 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 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부장관이 발령한 사항중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별표]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제12조제2항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오수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으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의 것의 관의 지름은 75밀리미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구멍(명)	150이하	3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관의 지름(㎜)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2.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의 것은 관의 지름이 75밀리미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미만	600미만	1,200미만	1,200이상
안지름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좌측의 율로 안지름 또는 갯수를 증가시킨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배수량(㎡)	1,000미만	2,000미만	4,000미만	6,000이상	
관의 지름(㎜)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300이상	좌측의 율로 관의 지름 또는 갯수를 증가한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내 유속이 초당 0.6 내지 1.5미터가 되어야 한다.
5.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쪽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